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5.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등본 교부시에는 수수료로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이 부과됩니다(우편교부 신청 시에는 해당 금액과 민원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합니다. 2. 교부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등본이 교부됩니다. 다만,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해당 등록공관 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등본이 교부됩니다(우편송부기간 별도). 3.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신청 및 등본교부 시 본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교부신청하는 것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및 수령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본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